

2025년도 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6. 2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8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 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□ 보고 대상

- 기 간: 2025. 10. 1. ~ 12. 31. (2025년 4분기)

- 대 상: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온·오프라인

- 온라인(응답소 부패 · 공익신고), 오프라인(우편 · 방문 등)

□ 접수 결과

- 2025년 4분기 총 65건 접수

<2025년 4분기 창구별 접수현황, 표 1>

(단위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10월	11월	12월	
공 익 제 보 센 터	공 익 신 고	37	15	13	9
	부 패 신 고	28	8	11	9
국 민 권 익 위 원 회	국 민 신 문 고	-	-	-	-
합	계	65			

※ 제보자가 접수 시 선택한 접수창구

2. 제보 분류 및 분배

□ 제보 분류

- 접수된 65건 분류 결과, 공익제보 해당 민원 47건

<공익제보 분류 결과, 표 2>

(단위: 건)

총 계	공익제보 해당 47건(72%)		일 반*
	부패신고	공익신고	
65 (100%)	18 (27.7%)	29 (44.6%)	18 (27.7%)

*일 반 : 공익제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내용상 관련 기관 감사부서의 검토가 필요하여 이송한 민원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의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<p>※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(판례)</p>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<p>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공익신고자보호법 [별표]의 신고대상 법률 위반행위</p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<p>공정한 직무수행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 위반 행위</p> <p>*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법상 부패행위에 포함됨</p>

□ 제보 분배

<제보 소관 기관별 분배, 표 3>

(단위: 건)

분배기관	유형	건수	주요 내용
총	계	65	
본 청	공익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안전관 복무 위반 ○ 인가 전 불법 택시 영업
	부패	3	
	일반	2	
	소계	8	
본 부 / 사 업 소	공익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원 복무 위반 ○ 공유재산 활용 사적 이익 취득
	부패	1	
	일반	1	
	소계	4	
투 자 출 연 기 관	공익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출기관 직원 복무 위반 ○ 입찰 과정 부패 의혹
	부패	3	
	일반	10	
	소계	14	
자 처 구	공익	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법 가설 건축물 축조 ○ 기계식 주차시설 관리 부실 ○ 불법 의료기관 개설 ○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사유 제보
	부패	9	
	일반	5	
	소계	36	
타 기 관	공익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사 비리, 예산 사적 유용
	부패	2	
	일반	-	
	소계	3	

※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조례의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 내용 미표기

[참고사항]

- 타기관 소관 제보의 경우 국민신문고로 이관 처리하거나 타기관 신고 안내 후 종결
- 공익제보센터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보의 분배자로서 접수된 제보를 관련 기관(자치구 포함)에 이첩하거나 제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은 일반민원 변경 등 처리

3. 제보 처리현황 (2025. 12. 31. 기준)

<접수제보 처리현황, 표 4>

(단위: 건)

총 계	처리완료(14)		종결(27)			진행중
	처 분	개 선 등	안 내	취 하	사실아님	
65	9	5	13	7	7	24

<처리완료>

- 처 분: 신분상 조치, 행정처분 등 정식 조치
- 개 선 등: 업무개선,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행정지도 등

<종 결>

- 안 내: 제보요건 안내, 보완요구, 타기관 신고 안내 종결
- 사실아님: 조사결과 사실아님 종결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6항